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18338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정성원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1. 4. 21.

판 결 선 고 2021. 5.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20,79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2020. 6.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4. 29. D조합과 사이에 서울 중랑구 E 일원에서 사업진행 중인 F 아파트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계약자인 피고에게 계약금 대출을 함에 있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D조합은 이 사건 업무협약에서 정한 연대보증책임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6나2046053), 위 법원으로부터 2017. 3. 2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D조합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D조합에게 1,584,479,64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2019. 7. 19. D조합에게 합계 36,220,797원(= 판결확정금액 25,259,058원 + 판결확정일자 10,961,739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6,220,797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인 2019. 7.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0. 6.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품질에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이나 사과조차 없는 상태에서 개인인 피고에게 모든 책임을 지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희